

서울특별시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518
- 발 의 자 : 이종환 의원 외 22명
- 발 의 일 : 2025년 3월 28일
- 회 부 일 : 2025년 4월 2일

2. 제안이유

- 시민들은 정보시스템의 발달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일반적인 민원사항 처리에는 불편함이 없지만, 각종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 행정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등 전문적이고 복잡한 행정업무에 대해 시민들이 해박한 지식을 갖기 어렵고, 이에 대응하는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도 개개인의 사정과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 제도는 이미 정착되었지만, 마을행정사는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되지 못한 실정임. 이에 따라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민원행정 업무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등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마을행정사의 운영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마을행정사의 역할, 위촉과 해촉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 다. 마을행정사의 상담대상과 방법, 결과 처리, 수당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5. 4. 5. ~ 4. 9.) 결과: 의견없음.

5. 검토 의견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이하 '본 제정안')은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행정사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에 대한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 본 제정안은 제정의 목적, 마을행정사 운영, 역할, 위촉, 해촉, 상담 대상, 상담방법, 상담결과 처리, 수당, 표창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시민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 시장은 행정사의 사회공헌 기회 확대 및 시민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을행정사를 운영함.
제3조(역할)	- 마을행정사의 역할 범위를 규정함.(행정상담,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지원, 행정업무 관련 시민 설명 및 자료 제공)
제4조(위촉 등)	- 시장은 「행정사법」에 따른 적격 행정사 중 필요한 인원을 위촉하고,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함.(연임 가능)
제5조(해촉)	- 마을행정사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사임 의사표시, 역할 수행 부적절,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지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제6조(상담대상)	- 상담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함.
제7조(상담방법)	- 비대면 상담(전화, 전자우편 등) 및 대면 상담 방법을 규정함.
제8조(상담결과 처리)	- 마을행정사의 운영 파악을 위한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 관련 사항을 규정함.
제9조(수당 등)	-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할 경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제10조(표창)	- 탁월한 활동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 서울시 관내 행정사는 약 2천 9백명(전체의 30.3%)으로,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르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인·허가 관련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련 상담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시·도별 행정사 현황]

(2023. 12. 31. 기준)

구분	신고 유형별								영업상황별		
	계	일반	해사	외국어	일반+ 해사	일반+ 외국어	해사+ 외국어	일반+ 해사+ 외국어	계	영업중	휴업
계	9,858	9,535	35	214	13	59	1	1	9,858	9,263	595
서울	2,986	2,841	5	111	1	27	0	1	2,986	2,867	119
부산	468	435	7	21	2	3	0	0	468	409	59
대구	359	351	0	8	0	0	0	0	359	330	29
인천	420	408	0	6	2	4	0	0	420	386	34
광주	268	263	0	3	0	1	1	0	268	253	15
대전	244	238	1	3	0	2	0	0	244	220	24
울산	145	144	1	0	0	0	0	0	145	134	11
세종	56	55	0	0	0	1	0	0	56	54	2
경기	2,560	2,502	3	38	1	16	0	0	2,560	2,416	144
강원	226	223	1	2	0	0	0	0	226	202	24
충북	193	190	0	3	0	0	0	0	193	181	12
충남	337	333	1	0	3	0	0	0	337	321	16
전북	436	425	1	8	0	2	0	0	436	430	6
전남	291	281	7	1	1	1	0	0	291	276	15
경북	301	299	0	0	1	1	0	0	301	281	20
경남	430	416	2	0	2	1	0	0	430	372	58
제주	138	131	6	1	0	0	0	0	138	131	7

- 출처 :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

[행정사의 업무 및 종류]

□ 행정사의 업무(행정사법 제2조)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행정사의 종류(행정사법 제4조) :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 타 시·도의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은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4년 3월 제정되어 시행중이고, 경기와 충남은 관련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일부 자치구에서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나, 수요 및 실적저조로 중단된 사례(도봉구 및 강북구(2017~2019), 성동구(2022~2023))가 있으며, 은평구는 작년부터 시범운영 중(7건 문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서울시 자치구 및 타 시·도 마을행정사 운영 사례]

지자체명	시행여부	시행기간	시행실적	비용	예산운영
성동구	X(운영종료)	2022.3. ~2023.12.	23건(2022년) 9건(2023년)	무료 운영	2,000천원(2022년) 0원(2023년)
강북구	X(운영종료)	2017.11. ~2019.10.	확인 불가	무료 운영	0원
도봉구	X(운영종료)	2017~2019	2건(2017년) 1건(2018년)	무료 운영	전액 구비
은평구	O(시범운영)	2024~2025	7건(2024년) 0건(2025년)	무료 운영	0원(재능기부)
인천광역시	O	- 2024.3.28. 조례 시행 - 2025.3.4. 마을행정사 위촉	0건	무료 운영	전액 시비
경기도	X (조례 입법예고 중)	-		-	-
충청남도	X (조례 제정 준비 중)	-		-	-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본 제정안은 복잡한 행정절차 및 다양한 행정업무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문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행정상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수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행정국은 복잡한 행정업무 신청 시 시민 편의제고를 위한 마을행정사 도입 취지에 동의하며 시범운영 등 단계적 도입을 통해 제도 안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나. 세부내용 검토

1) 목적 (안 제1조)

- 안 제1조는 시민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행정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본 제정안의 제정 목적을 밝힘으로써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마을행정사 운영 (안 제2조)

- 안 제2조는 ‘마을행정사 운영’이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여 명시한 사항으로 보임.

안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무료 행정상담(이하 “행정상담”이라 한다)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 다만, 시장의 마을행정사 운영을 강행규정(운영한다)으로 하기보다는, 시범운영 후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화(운영할 수 있다)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 역할(안 제3조)

- 안 제3조는 마을행정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범위 관련 해석 혼란의 소지를 제거하고 시민이 마을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예측하기 쉽게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안 제3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3.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라 한다)와 서울시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다만, 안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에 따르면 마을행정사의 주된 역할은 ‘무료 행정상담’으로 보이는 바, 안 제3조제2호(「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을 역할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4) 위촉 등(안 제4조)

- 안 제4조는 마을행정사의 위촉 조건과 임기를 규정한 사항으로 「행정사법」 제10조 및 제25조의4에 따른 적법한 행정사를 마을행정사로 위촉하도록, 위촉 조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마을행정사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4조(위촉 등) ①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행정사법」

제1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

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행정사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 도 또한 같다.

제25조의4(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 ① 행정사법인이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다만, 위촉 인원을 ‘필요한 인원’으로 규정하여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바, 인원의 범위(예시) 자치구별 00명 이내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연임 제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5) 해촉(안 제5조)

○ 안 제5조는 마을행정사가 사임 의사표시를 하거나,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마을행정사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행정사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안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6) 상담대상 (안 제6조)

- 안 제6조는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으로 명시하여 마을행정사 서비스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6조(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7) 상담방법 (안 제7조)

- 안 제7조는 행정상담을 ‘비대면 상담’과 ‘대면상담’ 및 ‘주민센터나 사업장 방문 상담’ 등으로 규정하고 ‘즉시 상담’(부재시 신속한 상담)을 명시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담 서비스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제7조(상담방법) ① 행정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8) 상담결과 처리 (안 제8조)

- 안 제8조는 시장이 마을행정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제8조(상담결과 처리)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분석하여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 다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 관련 행정사의 비밀엄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법」 제23조에 저촉될 우려는 없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행정사법」

제23조(비밀엄수)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수당 등(안 제9조)

- 안 제9조는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은 무료로 하되,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주민센터, 신청인의 사업장 등)에서 대면 상담 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실비 수준의 수당 및 여비 지급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제9조(수당 등) ① 비대면 상담, 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마을행정사가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수준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 표창(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마을행정사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탁월한 활동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표창 수여를 통해 마을행정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상담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제10조(표창)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전문위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이 태 기
------	-------	-------	-------